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죄피해자 범죄 발생지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주거지원금〉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79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범죄피해자의 범죄 발생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3
2. 주거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항	11
※ 참고자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현황	14

I. 제안경위

1. 제출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4. 11. 5.
3. 회부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범죄 발생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장의2 주거지원금의 지급</u> <u>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u>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

현행	개정안
	<u>폭력행위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u>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 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톱킹행위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톱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법 제9조의2제

현행	개정안
	<u>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u>1. 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u> <u>2. 해당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협의한 경우</u> <u>3. 피해자 또는 그 동거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③ 국가는 지급한 주거지원금의 범위에서 해당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u> <u>④ 주거지원금의 지급은 보호시설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2조의3(주거지원금의 금액) 주거지원금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다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임차인이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이 부과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 개정안의 주거지원금 지급 대상 범죄 >

죄 명	내 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중상해, 체포, 감금, 특수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죄 등의 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중상해, 체포, 감금, 영아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금지 위반죄 등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 및 「형법」상 강도강간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로서 강간과 추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강도 및 특수강도 등의 범죄

□ 주거지원금 지급은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유사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예산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범죄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한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지원제도¹⁾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은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스마트워치 대여 등 각종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피해자에 지급되는 보호수단 >

구 분	신변보호 내용
민간경호	• 고위험 피해자를 선별하여 민간경호원(2인) 배치
지능형 CCTV	• 주거지에 위험을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 설치
스마트워치	•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대여
임시숙소	• 보복위험으로 귀가 곤란 시 사전 지정한 임시숙소 지원
보호시설	• 장기간 거소 지원 필요 시 관계기관 보호시설로 연계
이전비	•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이전비 지원
맞춤형 순찰	• 피해자 생활 동선 고려하여 주거지·직장 등 순찰 실시
112 등록	• 112시스템에 대상자 정보 등록, 신고접수 시 자동 현출

* 자료: 법무부

1) 참고자료 p. 13 참조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 환경 개선사업²⁾으로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경제, 주거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

지원내용	2024년	2025년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5백만원	자립지원금 10백만원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 최대 5년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350개소	주거지원시설 353개소
	자립지원금(500만 원)은 퇴소 시 지급	자립지원금(500만 원)을 퇴소 이후에도 지급

* 자료: 여성가족부

- 또한, 개정안은 주거지원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차임으로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수십만 원의 월차임으로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마련되는 주거지원금은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법무부 등 피해자 보호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주거지원금 간 차이로 피해자 사이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월차임의 3개월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2) 여성가족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2025. 1. 10., p.12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거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주거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가 주거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를 거쳐 그가 받은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주거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국세징수에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하게 수급한 주거지원금을 국세징수에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주거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은 주거지원금의 환수 사유를 현행법 제30조³⁾에 규정된 구조금의 환수 사유 중 일부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제30조제1항제2호의 사유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개정안 제32조의2제1항 각호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9조⁴⁾에서 상정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 제30조(구조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결정에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4)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2. 직계혈족
- 3. 4촌 이내의 친족
-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073

※ 참고자료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내용

I. 지원 요건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일 것
 - 사망, 장애,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약취·유인·체포·감금·보복범죄·아동학대범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II.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국민임대	• 국민임대주택 임대 • 주택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 후 임대 • 임대보증금(500만원~900만원 수준)과 월 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를 지급 받고 임대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일정 한도 이내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을 지급받고 임대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